

예 산 총 칙

2015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합 계 | 140,318,011 | 4,209,540 |
| 일반회계 | 121,854,893 | 3,655,647 |
| 특별회계 | 18,463,118 | 553,894 |
| 기타특별회계 | 18,463,118 | 553,894 |
| 의료급여기금 | 236,776 | 7,103 |
|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| 1,227,766 | 36,833 |
| 주거환경개선사업 | 414,356 | 12,431 |
| 주차장 | 16,318,183 | 489,545 |
| 지하수관리 | 204,982 | 6,149 |
|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| 61,055 | 1,832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안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367,581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6 조 금회 추경외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교부되는 국·시비 보조금(구비부담금 포함), 지방교부세, 재원조정교부금,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